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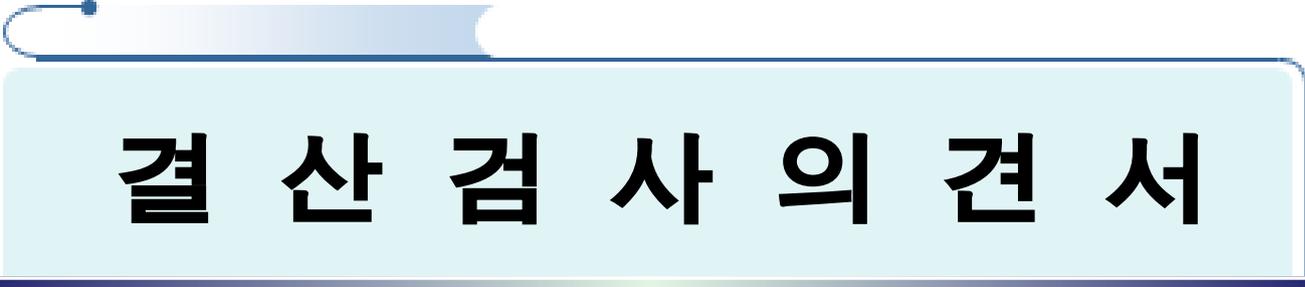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7
○ 결산검사 경과	10
○ 결산 요약	11
○ 개선 및 권고사항	27
I 세입 분야	29
1.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29
II 세출 분야	31
1. 계속비 사업 편성	31
2. 예산 전용 및 변경	32
3.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 적립금 관리	34

Ⅲ. 기금 분야	35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방안 수립 필요성	35
2. 기금 사용의 적정성	36
Ⅳ. 재무제표 분야	37
1.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전용계좌 미사용 등	37
Ⅴ. 결산서의 첨부서류 분야	38
1.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지출 효율화	38
2.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의 적정성	39
3. 동작구어르신행복(주) 2018년 법인세 신고 경정 권고	40
○ 건의사항	43
1.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예산절감 노력 필요	45
2. 공원 등 위험수목 관리 건의	46
○ 수범사례	47
1. 동작 희망사다리 상담사업 프로젝트	49
2. 수거 벽보 재활용 나눔사업	50

<표 차례>

[표 1] 세입·세출결산 총괄(1)	13
[표 2] 세입·세출결산 총괄(2)	13
[표 3] 일반회계 세입결산	14
[표 4]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14
[표 5] 세목별 세입 결산	15
[표 6] 일반회계 세출결산	16
[표 7]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16
[표 8]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17
[표 9] 특별회계 세입결산	18
[표 10]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18
[표 11] 특별회계 세출결산	19
[표 12]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19
[표 13] 기금 조성현황	20
[표 14]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21
[표 15]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22
[표 16] 성과지표 달성현황	23
[표 17] 채권 현재액 결산	24
[표 1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25
[표 19]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25
[표 20] 전년대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32
[표 21] 부서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집행내역	32
[표 22] 2018 통합관리기금 조성내역	35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2019년 4월 30일

본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부터 동작구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들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동작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동작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동작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본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박홍옥

위원 오현석

위원 이성진

위원 전정현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9. 4. 1. — 4. 30. (3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박홍옥	결산검사 총괄,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동작구의회의원
위 원	오현석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	공인회계사
위 원	이성민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세 무 사
위 원	전정현	재무제표 총괄,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공인회계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자료수집 및 검토	4.1 ~ 4.7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검토, 결산검사 자료 수집 등
결 산 검 사 - 분청, 의회, 보건소 - 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	4.8 ~ 4.21	부서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 결산검사 실시 -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
의 견 서 작 성 및 검 토	4.22 ~ 4.30	검사사항 정리 및 의견서 작성, 수검기관 의견 수렴, 최종 의견서 및 답변서 등 검토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결산 요약

1. 결산검사 총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세입·세출결산 총괄(1)

(단위 : 백만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 = A-B)
합 계	615,976	648,190	526,097	122,093
일반회계	600,741	631,646	518,691	112,955
특별회계	15,235	16,544	7,406	9,138

[표 2] 세입·세출결산 총괄(2)

(단위 : 백만 원)

회 계 별	현 년 도 채무상환	이월액				
		명 시 이월비	사 고 이월비	계속비	보 조 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	28,803	15,099	-	5,828	72,364
일반회계	-	28,803	15,099	-	5,810	63,243
특별회계	-	-	-	-	17	9,121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8,190백만 원으로 예산액 615,976백만 원보다 32,214백만 원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81.16%인 526,097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2,093백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는 28,803백만원, 사고이월비 15,099백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828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364백만 원이며, 명시 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 세입·세출 결산검사

가. 일반회계

1) 세 입

[표 3]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600,741	653,039	631,646	688	20,705
결산확인액	600,741	653,039	631,646	688	20,705
차 액	-	-	-	-	-

수납액 631,646백만 원은 예산현액의 105.14%로써 30,905백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및 지난연도 수입 등의 초과수납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72%이며 결손액은 688백만 원으로 시효소멸이 581백만 원, 무재산 70백만 원, 평가액 부족으로 인한 결손은 13백만 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이 1백만 원, 기타 23백만 원입니다.

[표 4]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31,646	631,646	-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 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표 5]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00,741	653,039	631,646	688	20,705
지	방 세	78,595	80,567	79,794	87	687
세 외 수 입	소 계	53,957	85,666	65,046	601	20,018
	경상적	37,317	37,858	37,727	-	130
	임시적	16,640	47,808	27,319	601	19,888
지	방 교 부 세	11,253	13,229	13,229	-	-
조	정 교 부 금 등	124,640	141,300	141,300	-	-
보	조 금	247,397	247,378	247,378	-	-
보	전 수입 등 및 내 부 거래	84,899	84,899	84,899	-	-

세목별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2.63%인 79,794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0.29%인 65,046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2.09%인 13,229백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2.37%인 141,300백만 원, 보조금은 39.16%인 247,378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 세 출

[표 6]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567,464	600,741	518,691	43,902	38,148
결산확인액	567,464	600,741	518,691	43,902	38,148
차 액	-	-	-	-	-

예산액은 567,464백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3,276백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00,741백만 원으로, 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6%인 352백만 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부족 등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34%에 해당하는 518,691백만 원이며 이월액은 43,902백만 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비는 28,803백만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5,099백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조금 등 예산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 연기, 준공기한 미도래 등 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5%에 해당되는 38,148백만 원으로 주요 이유는 지출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기인합니다.

[표 7]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18,691	518,691	-

세출계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표 8]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회계연도 지출액	2018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	금액	비율 (%)
합 계	482,075	600,741	518,691	86.34	36,616	7.60
일반공공행정	44,071	57,952	49,421	85.28	5,350	12.14
공공질서및안전	547	1,158	906	78.26	359	65.63
교육	8,947	8,540	8,283	96.98	△664	△7.42
문화및관광	9,287	13,298	6,239	46.92	△3,048	△32.82
환경보호	26,720	33,495	30,772	91.87	4,052	15.16
사회복지	237,782	303,672	272,116	89.61	34,334	14.44
보건	13,742	15,056	12,810	85.08	△932	△6.78
농림해양수산	-	1,247	1,193	95.70	1,193	-
산업·중소기업	2,466	6,470	3,706	57.28	1,240	50.28
수송및교통	9,417	12,028	9,430	78.40	13	0.14
국토및지역개발	26,513	23,961	16,747	69.89	△9,766	△36.83
예비비	-	8,129	-	0.00	-	-
기타	102,583	115,735	107,067	92.51	4,484	4.37

본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지출액은 518,69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6%에 해당하는 36,61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전체 지출액의 52.46%인 272,116백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14.44%인 34,33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 분야(906백만 원)와 산업·중소기업 분야(3,706백만 원) 순으로 각각 65.6%, 50.32% 증가하였습니다.

총 600,741백만 원의 예산현액 중 518,691백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86.34%입니다.

나. 특별회계

구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는 각각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1) 세 입

[표 9]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합계	15,235	31,201	16,544	267	14,390
의 료	681	853	718	-	135
주 차 장	14,554	30,348	15,826	267	14,255
결산확인액	15,235	31,201	16,544	267	14,390
차 액	-	-	-	-	-

수납액 16,544백만 원은 예산현액의 108.59%로써 1,309백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부담금 및 기타사용료 등의 초과 수납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3.02%이며 결손액은 267백만 원으로 시효소멸이 215백만 원, 무재산 52백만 원입니다.

[표 10]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6,544	16,544	-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2) 세 출

[표 11]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산액 합계	15,235	15,235	7,406	-	7,829
의 료	681	681	661	-	20
주차장	14,554	14,554	6,745	-	7,809
결산확인액	15,235	15,235	7,406	-	7,829
차 액	-	-	-	-	-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5,235백만 원(전년도 이월내역 없음)으로 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9%인 15백만 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부족 등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8.61%에 해당하는 7,406백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39%에 해당되는 7,829백만 원으로 주요 이유는 지출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기인합니다.

[표 12]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406	7,406	-

세출계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3. 기금의 결산검사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3]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담당부서
		계	조성액	사용액		
계	64,911	12,896	20,521	7,626	77,806	
통합관리기금	15,242	284	284		15,527	기획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5,281	344	3,527	3,183	5,625	일자리경제담당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8,138	12,208	14,309	2,101	40,346	행정지원과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1,310	△135	110	245	1,176	자치행정과
자활기금	1,102	△1	28	30	1,100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045		19	19	1,045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1,653	△1	30	31	1,653	어르신청소년과
영유아·아동· 청소년복지기금	1,215	1	22	21	1,216	어르신청소년과
양성평등기금	1,014	2	19	17	1,016	보육여성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851	18	21	3	869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243	84	153	70	1,327	청소행정과
옥외광고정비 기금	2,269	△127	438	564	2,143	도시계획과
도로굴착복구 기금	1,212	△37	630	666	1,176	도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2,714	256	750	494	2,970	안전치수과
식품진흥기금	621	△2	180	182	619	보건위생과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64,911백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521백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7,626백만 원을 공제한 77,80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896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증감액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액 14,309백만 원(일반회계 전입금 14,000백만 원 등)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

[표 14]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
자산	1,762,125	1,703,451	58,674	3.44
유동	223,749	188,670	35,079	18.59
비유동	1,538,375	1,514,781	23,594	1.56
투자	16,557	16,913	△356	△2.10
일반유형	210,258	211,451	△1,193	△0.56
주민편의	339,907	330,950	8,957	2.71
사회기반	920,951	922,935	△1,984	△0.21
기타	50,702	32,532	18,170	55.85
부채	51,683	40,124	11,559	28.81
유동	6,630	9,054	△2,424	△26.77
기타비유동	45,052	31,070	13,982	45.00
순자산	1,710,442	1,663,327	47,115	2.83
고정	1,477,331	1,470,818	6,513	0.44
특정	75,365	63,703	11,662	18.31
일반	157,747	128,806	28,941	22.47

[표14]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1,762,12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674백만 원(3.44%) 증가하였으며,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35,079백만 원(18.59%) 증가, 비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23,594백만 원(1.56%)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51,68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59백만 원(28.81%) 증가하였으며, 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2,424백만 원(26.77%) 감소, 비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13,982백만 원(45%)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710,44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115백만 원(2.83%) 증가하였습니다.

[표 15]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 사업순원가 (① - ②)	108,205	121,971	△13,766	△11.29
① 사업총원가	368,856	342,391	26,464	7.73
② 사업수익	260,650	220,420	40,230	18.25
II . 관리운영비	109,688	108,367	1,321	1.22
III . 비배분비용	9,929	9,369	560	5.98
IV . 비배분수익	16,402	22,093	△5,691	△25.76
V .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11,420	217,614	△6,194	△2.85
VI . 일반수익	266,729	246,332	20,397	8.28
VII . 재정운영결과 (V - VI)	△55,309	△28,718	△26,591	△92.59

[표15] 구의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순원가는 108,205백만 원이고, 이 중 관리운영비(109,668백만 원), 비배분비용(9,929백만 원) 및 비배분수익(16,402백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11,420백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66,729백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일반수익)는 △55,30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591백만 원(92.59%) 감소하였습니다.

5.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표 16]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및 미달성수 (B)	미달성수	달성율 (B/A)
계	10	70	195	155	40	79.49
감사담당관	1	1	5	4	1	80.00
일자리경제 담당관	1	2	9	6	3	66.67
행정국	1	19	45	35	10	77.78
기획재정국	1	7	21	21	0	100
복지환경국	1	12	35	30	5	85.71
도시관리국	1	8	18	12	6	66.67
안전건설 교통국	1	6	20	14	6	70.00
미래비전 전략기획단	1	2	5	4	1	80.00
보건소	1	12	34	26	8	76.47
의회사무국	1	1	3	3	0	100.00

동작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와 ‘성과 보고서’ 에 10개의 전략목표와 총 70개의 정책사업목표, 19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중 155개의 지표를 초과 달성 또는 달성하여 79.49%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1) 채 권

[표 17] 채권현재액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	의 이 행 기 도 도 래 예 정 액 간 액
		발생액 ㉡	소멸액 ㉢		
합 계	22,944	7,591	8,370	22,165	3,328
일 반 회 계	10,929	598	1,364	10,164	124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12,015	6,992	7,006	12,001	3,20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0,937	6,532	6,704	10,765	3,036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792	327	170	948	98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91	3	9	85	-
식 품 진 흥 기 금	195	130	123	203	70

※ 기금의 경우, 채권 해당금액이 있는 기금만 표시

2)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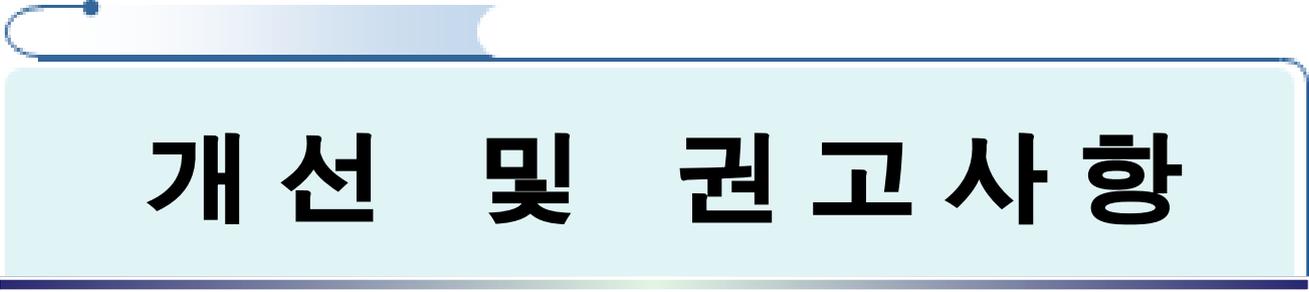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
		증 액 ㉡	감 액 ㉢	
합 계	1,529,347	48,029	26,642	1,550,735
행정 재산	1,485,381	47,998	13,489	1,519,890
공용 재산	594,666	26,842	4,253	617,255
공공용재산	890,715	21,156	9,236	902,635
일반 재산	43,966	31	13,153	30,845

4) 물 품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9]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 = ㉠ + ㉡ - ㉢
		취 득 ㉡	처 분 ㉢	
수 량	1,621	140	50	1,711
금 액	8,092	1,635	547	9,180



개 선 및 권 고 사 항

I. 세입 결산 분야

1.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주차관리과(舊교통지도과))

[현황 및 문제점]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하게 되면 상기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이 폐차말소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고액체납자의 채권회수관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 현황 (상위 10건)

(단위 : 백만 원)

연번	해당 차량	건 수	체납총액	최종 단속월
1	A	544	22	2008-06
2	B	377	22	2013-07
3	C	366	18	2008-01
4	D	345	21	2008-01
5	E	289	15	2015-05
6	F	284	14	2015-11
7	G	278	19	2008-01
8	H	269	15	2013-06
9	I	253	13	2009-04
10	J	224	15	2010-11

[개선 및 권고사항]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142억 원의 사유가 오로지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 분류는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미수납액 관리는 세부 원인별로 관리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체납채권에 대한 회수절차 중 하나인 압류절차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채권결손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년 말 결손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결손처리 연도가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고의 및 장기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시길 권고합니다.

II. 세출 결산 분야

1. 계속비 사업 편성 [제도 개선 사항] [기획예산과]

[현황 및 문제점]

구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는 해당 조항의 소극적 해석을 통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동 규정에 따라 구는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예산 전용 및 변경 [제도 개선 사항] [기획예산과]

[현황 및 문제점]

구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29건 352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건 15백만 원이며,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48건 544백만 원이 있습니다.

[표 20] 전년대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단위 : 백만 원)

부 서	전 용		변 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회계연도	30	368	48	544
2017회계연도	44	936	76	2,399

[표 21] 부서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집행내역 (단위 : 백만 원)

부 서	전 용		변 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0	368	48	544
일자리경제담당관	4	85	6	75
행정지원과	1	1	2	32
자치행정과	3	28	2	6
사회적마을과	-	-	2	24
생활체육과	-	-	1	5
재무과	-	-	1	1
교육문화과	2	2	3	29
징수과	-	-	1	10
복지정책과	2	30	-	-
사회복지과	-	-	1	12

(단위 : 백만 원)

부 서	전 용		변 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르신청소년과	10	27	7	26
보육여성과	1	5	4	174
청소행정과	2	38	2	9
맑은환경과	-	-	2	5
건축과	1	4	1	1
교통지도과	1	15	1	1
도로관리과	1	2	-	-
도시전략사업과	1	130	5	35
건강관리과	-	-	3	34
의회사무국	1	1	4	67

① 예산전용의 경우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중 보수(101-01)를 직급보조비 등 수당으로 전용하는 것은 보수와 기타 기준인건비의 예산수립 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수와 기타직보수의 2018년 집행율은 91.9%이며, 예산수립 기준의 특성상 상당한 미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② 예산변경의 경우 동일한 편성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를 상호 변경하거나, 초청여비를 국외여비로 상호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퇴직금 계산과 퇴직 적립금 관리 (치수과(舊안전치수과), 건강관리과)

[현황 및 문제점]

2018년말 안전치수과(치수과) 및 건강관리과 소속 무기계약직의 퇴직 금액과 퇴직적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부 서	대상자	퇴직금액	퇴직적립금
안전치수과(치 수 과)	무기계약직 1명	263	자료 미제시
건 강 관 리 과	무기계약직 14명	130	113

① 안전치수과(치수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이 263백만 원에 달하고 있는 바, 퇴직금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② 건강관리과

2018년 말 퇴직금 재원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보다 미달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각 부서에서 관리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파악하여 최근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계약서류 계약체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도별로 예치되어야 하며,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금 예치 금액은 해당연도 말에 세입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Ⅲ. 기금 결산 분야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방안 수립 필요성[제도 개선 사항] [기획예산과]

[현황 및 문제점]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준일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2] 2018 통합관리기금 조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 ㉠ + ㉢)
		계 ㉡ = ㉠ - ㉢	조성액 ㉠	사용액 ㉢	
통 합 관 리 기 금	15,242	284	284	-	15,526

[개선 및 권고사항]

구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동 기금의 운용을 위한 근거가 없습니다. 동 기금이 계속 증가하면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의 해결을 통해 구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

2. 기금 사용의 적정성

[생활경제과(舊일자리경제담당관, 도시계획과, 안전재난담당관(舊안전치수과))

[현황 및 문제점]

구는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회계와 기금을 동시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발견되었습니다.

① 안전치수과 (치수과)

2018년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획)중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사용하였습니다.

② 일자리경제담당관(생활경제과), 도시계획과

동작액션미디어거리조성사업 예산 600백만 원 중 옥외광고기금으로부터 260백만 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동작액션미디어거리조성사업 옥외광고기금 보조금(250백만 원) 교부 관련 교부조건이 보조금 집행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받았으며, 이후 결과보고 등 별도의 사후조치가 없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 보상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에 대한 원천징수(사업 또는 기타소득)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회계와 기금이 별도의 사업으로 집행해야 하며,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이행의무의 누락이 없도록 업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Ⅳ. 재무제표(재무결산) 분야

1.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전용계좌 미사용 등 [제도 개선 사항] [시설관리공단(기획예산과)]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시설자본금 700백만 원의 유지를 위해 공단의 회계 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구로부터 공단 예산에 편성하여 보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보전 받은 자본금을 활용하여 기존 자산의 유지 보수 또는 신규 자산의 구입을 하고 있으며, 미사용한 일부(219백만 원)는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회계규정을 두고 감가상각방법으로 유형자산은 정률법, 무형자산 및 수탁자산은 정액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고 잔존 내용연수가 짧아 질수록 감가상각비가 하락하는 방법으로 공단이나 재단 설립 초기에 자본금 보전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정해진 감가상각의 방법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향후 신규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설비 재원 중 미사용 금액은 다른 현금자산과 구분하여 별도계좌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V. 결산서의 첨부서류 분야

1.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지출 효율화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사용료 등 수입은 규정에 따라 전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익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 수입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지출은 구의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않는 운영은 불가피하게 재정운용 효율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체육문화과(舊생활체육과)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체육 시설 사용료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중간수준으로 설립 취지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신규로 개관하는 시설(예, 동작삼일수영장 등)의 경우 합리적인 사용료 책정이 필요합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구는 공단의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의 수립이 요청됩니다. 운영비를 구가 전액 지원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규모와 연동한 지출 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자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공단 수입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의 적정성 [동작복지재단(복지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에 2018년 총 720백만 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중 500백만 원은 기본재산 전입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입니다. 재단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 및 구의 중장기 재정 운용(지원)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구는 기본재산 56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 자체 방침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2018년 기본재산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이후 변화된 재단의 재정상황, 정책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동작구는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작구어르신행복(주) 2018년 법인세신고 경정권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일자리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어르신행복(주)가 2019년 4월 1일에 동작세무서에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및 납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당 기 순 이 익 (1)	112	손익계산서 참조
소 득 조 정 금 액 (2)	14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각 사 업 연 도 금 액 (3) = (1) + (2)	126	
이 월 결 손 금 (4)	1	과거 발생한 결손금
과 세 표 준 (5) = (3) - (4)	125	
세 율 (6)	10%	
산 출 세 액 (7) = (5) * (6)	12	
감 면 세 액 (8)	-	쟁점사항(*)
납 부 할 세 액 (9) = (7) - (8)	12	

동작구어르신행복(주)이 법인세 신고 시 감면세액을 미적용한 사유가 회사의 사업수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중 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매출상한선 10억 원(동작구어르신행복(주) 2018년 매출액 22억 원)을 초과하므로 감면세액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상기 표의 쟁점사항(*)).

동작구어르신행복(주)의 주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 주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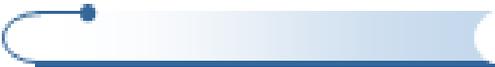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따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중소기업 중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출상한선은 30억 원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동작구어르신행복(주)은 2018년 법인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하고, 동 경정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신고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2018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및 환급 예상 세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당 기 순 이 익 (1)	112	손익계산서 참조
소 득 조 정 금 액 (2)	14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각 사 업 연 도 금 액 (3) = (1) + (2)	126	
이 월 결 손 금 (4)	1	과거 발생한 결손금
과 세 표 준 (5) = (3) - (4)	125	
세 율 (6)	10%	
산 출 세 액 (7) = (5) * (6)	12	
감 면 세 액 (8)	2	경정할 금액 약 20%(*)
납 부 할 세 액 (9) = (7) - (8)	10	최저한세는 추가 고려



건의 사항

1.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예산절감 노력 필요 (청소행정과)

동작구는 2018년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비상벨 설치, 본동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공사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한증막 공중화장실 철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계약방법	집행예산	비 고
공 중 화 장 실 비 상 벨 설 치	수 의 계 약	13	
본 동 공 중 화 장 실 시 설 개 선 공 사	수 의 계 약	183	
한 증 막 공 중 화 장 실 철 거	수 의 계 약	9	

추진사업 중 한증막 공중화장실 철거공사의 경우, 발주 시 철거물량 산출에 있어 콘크리트 분쇄물량 및 폐기물 처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발주 시 물량 산출에 있어 적정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원 등 위험수목 관리 건의 (공원녹지과)

동작구에서는 공원 및 임야 내 또는 가로수 위험수목 별목 및 가지치기를 해마다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관내 위험수목 중 135주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위험수목의 선별은 성장활동 등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목관리 또한 전문 면허소지자를 현장 투입하여 위험수목을 선별하고 별목 등의 작업에 참여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 임목 관련 숙련된 기술을 필수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 면허 소지자와 더불어 자체인력으로 현장에서 별목, 가지치기 등 작업을 병행토록 한다면 불필요한 별목 방지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 범 사 례

동작 「희망사다리 상담사업」 프로젝트

(사회복지과)

1. 사업개요

- 1) 배 경 : 자활참여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동적인 상담에 따른 만족도 저하로 찾아가는 맞춤형 집중상담 필요
- 2) 대 상 : 자활사업 대상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상담불응 등의 사유로 조건 불이행한 자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및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 3) 방 법 : 각 동 주민센터 순회, 현장에서 직접상담
- 4) 상담인력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 의료급여 관리사 3명
- 5) 상담내용
 - 당사자에게 맞는 자활·자립지원 심층상담
 - 의료급여 사용방법 등 의료급여제도 안내

2. 추진실적 : 사업추진 후 상담사례 증가

(단위 : 명)

사업년도	계	자활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2016년	192	62	130
2017년	185	66	119
2018년	207	72	135

3. 주요성과

- 1)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만족도 제고
- 2)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적극적 현장 행정서비스 지원

수거 벽보 재활용 나눔사업

(도시계획과)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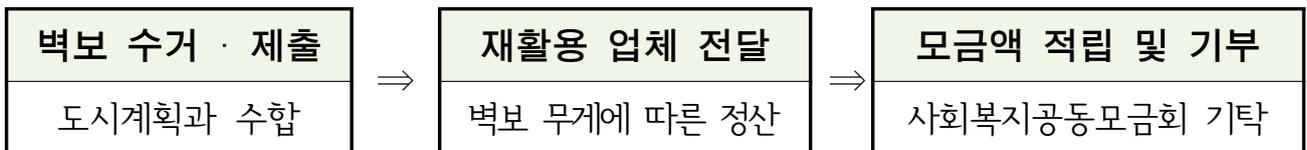
1) 목 적

-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및 인센티브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수거 벽보 증가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나눔 문화 확산

2) 운영기간 : 2016. 11월 ~ 현재

3) 추진대상 : 수거보상원 및 동에서 수거한 첩지류 일체(벽보, 전단)

4) 추진방법



2. 추진성과

사업추진기간	수거량	정산금액(적립금)	비 고
2016.11월~12월	1,518kg	151,800원	전액 기탁
2017. 3월~12월	11,040kg	1,417,700원	전액 기탁
2018. 3월~12월	11,828kg	1,243,900원	전액 기탁

3. 기대효과

- 1)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 2) 소각 폐기물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 3) 적립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